

전주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21884 판결 [보증금 등 이행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5. 8 선고 2016나1159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21884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광호엔지니어링

피고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 선고 2016.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창호 및 금속 구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알루미늄 창호 등 제품 및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 영업을 하다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060호로 보증금반환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6. 5. "피고(이 사건 소외회사)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171,833,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소외회사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회사는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21.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며칠 후인 2014. 2. 4. 창호 제작 등 소외 회사와 동종의 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171,833,000원 등의 금전채무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사실상 소외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171,833,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회사와 피고의 영업목적과 그 거래처가 거의 유사하고, 그 본점 소재지가 인접해 있으며,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C, D, E, F이 소외 회사를 퇴사한 다음 피고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소외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G, H, I이 피고 설립시 피고의 대표이사, 이사로 각 등재된 사실, 소외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다음 그 신청을 취하한 후 얼마되지 않아 피고가 설립된 사실, 소외회사 내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운영자인 J은 피고가 설립되자 피고에 일부 특허권과 디자인등록권을 양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3,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는 2007. ~ 2013. 11.까지 소외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중이던 2011. ~ 2013.경 위 J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G는 소외회사를 사직한 후 그 경력을 살려 위 H과 각 1억 원씩 출자하여 소외회사와 동종업종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출자를 전혀 하지 않은 I을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한 사실, 위 J은 G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G의 요구로 피고에 그 명의의 일부 특허권과 소외회사 명의의 디자인등록권을 양도한 사실, 이에 당시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설립, 위 특허권 및 디자인등록권 양도사실을 문제 삼아 위 J, G, H, I을 각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이 각 기각됨으로써 위 처분이 확정된 사실, 이후 G는 자금부족 등으로 피고법인을 경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4. 4. 10. 소외 K에게 피고법인을 양도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이후 위 K은 피고 법인을 인수한 후 위 특허권 등이 별 도움이 되지 않자 2014. 4. 30. 이를 다시 소외회사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소외회사나 J이 피고 설립에 출자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동종 회사 사이에는 영업상 그 거래처가 다소 중복되고, 직원의 이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태선